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713 발의연월일: 2025. 4. 10.

발 의 자: 강선우·강훈식·김윤덕

서미화 · 장종태 · 정동영

김성회 • 박지원 • 김 윤

김주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증권의 매매 및 대여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·사회·지배구조(ESG) 원칙을 고려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, 부동산에 대한 투자 등 대체투자의 방법으로 운용할 경우에 ESG 원칙 적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.

이로 인하여 최근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ESG 원칙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는지 여부에 논란이 있는 상황임. 나아가 대체투자의 경우 그 특성상 위탁운용사 선정 이후 운용 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로 ESG 원칙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위탁운용사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기금 운용 방식과 무관히 ESG 원칙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여 대체투자를 위한 위탁운용사 선정 시 ESG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2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2조제4항 중 "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"을 "기금을"로, "고려할 수 있다"를 "고려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02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	제102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		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		
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	④ <u>기금을</u>		
관리 ·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			
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			
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			
경・사회・지배구조 등의 요소			
를 고려할 수 있다.	<u>고려하여야 한다</u> .		
⑤・⑥ (생 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		